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6,581,951	18,197,459
일반회계		597,190,137	17,915,704
특별회계		9,391,814	281,754
기타특별회계		9,391,814	281,7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479	7,30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03,700	21,11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16,659	18,500
	주차장 특별회계	2,264,500	67,935
	기반시설 특별회계	86,484	2,595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3,463	404
	수질개선 특별회계	67,926	2,0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395,603	161,86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675,655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